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센터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 및 장비 확충으로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지원받아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2017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비는 집행 불가(부지매입, 사무용 집기, 비품, 실험용 재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집행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꽃 육묘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 150,000,000원을 배정받아, 사업 시행지침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사무용 집기(책상외 7종)를 구매하는데 2,400,000원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주의] 앞으로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